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49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이학영 · 박해철 · 이해민
허중식 · 김태선 · 서미화
박 정 · 이개호 · 박정현
윤종균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
2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을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한다.

1. 사업자: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

법률 제2115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을 “삭제등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업자”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한다.

법률 제2115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중 “수거등을”을 각각 “수거등 또는 삭제등을”로, “사업자, 해당 수거등”을 “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 해당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를 “권고”로,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명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어린이제품의 <u>수거등의 권고</u>)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u>를 권고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9조(어린이제품의 <u>수거등 또는 삭제등의 권고</u>) ① ----- ----- ----- ----- -----<u>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u>----- ----- -----.</p> <p>1. <u>사업자</u>: 해당 어린이제품의 <u>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u></p> <p>2. <u>통신판매중개자</u>: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u>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u></p>

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 또는 삭제등의 명령) ① -----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수거등 또는 삭제등-----.

1. (현행과 같음)

2. -----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3.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거등 또는 삭제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5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 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법률 제2115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 또는 삭제등을-----수거등 또는 삭제등을-----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 해당 수거등 또는 삭제등-----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

-----.

1. -----수거등 또는 삭제등-----
--

2. ~ 22. (생 략)

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 25. (생 략)

④ (생 략)

2.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권고-----

-----명령-----

2.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